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6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실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결정 등,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실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임실군으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